

[전직금지분쟁] 제한범위 관련 추상적 용어, 표현으로 광범위한 제한 포함 전직금지약정

- 무효 판단: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7가합110787 판결



전직금지약정 조항

7.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

- ① “을”(피고)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“갑”(원고) 또는 “갑”의 파트너사와 직·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여할 수 없으며, “갑”의 동의가 없는 한 “갑”의 영업과 관련된 타 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.
- ② “을”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“갑” 또는 “갑”의 협력사 및 고객사의 사업상의 비밀, 정보, know-how 등을 임의로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든 인사상 처분을 수용하고 민,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 임의로 활용된 정보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단순 참고 목적이거나 활용된 정보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.

- 1. 재직기간 중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직 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
- 2. 회사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.

## 법원의 판결요지 - 전직금지약정 무효

### 구체적 사안의 판단 및 판결이유

#### 3) 제한의 기간·지역 및 대상 직종

전직금지약정의 특성상 전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직종, 지역 등을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,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살펴보면 '원고의 영업과 관련된 타 회사', '경쟁회사'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피고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(피고는 이 사건 경쟁회사가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). 또한 피고의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,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(다만 원고는 사직 후 2년 동안의 전직금지를 구하고 있다).

#### 6)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

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 등은 종전의 직장 등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.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사실상 피고가 동종 업계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피고에게 주는 부담이 상당이 크다.

#### 다. 소결론

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(실령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,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사용자로서 가지는 이익의 보호가치의 정도,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, 전직금지로 인해 피고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, 제한기간은 1년을 봄이 타당하고,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.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).

결론: 전직금지약정 전부 무효, 최소한 전직금지기간 2년 중 1년 일부 무효, 회사의 전직

금지청구 기각 판결

첨부: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7가합110787 판결

경업금지, 전직금지, 영업금지, 영업비밀, 형사고소, 민사소송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